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서

학대 예방은
신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목 차

0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03

02 장애인학대 현황 04

03 장애인학대 알아가기 06

04 학대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징후 07

05 장애인학대 행위자 처벌 08

06 장애인학대 사례 09

0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11

08 장애인학대 신고자 보호 12

09 장애인학대 신고 및 지원 절차 14

10 피해자 지원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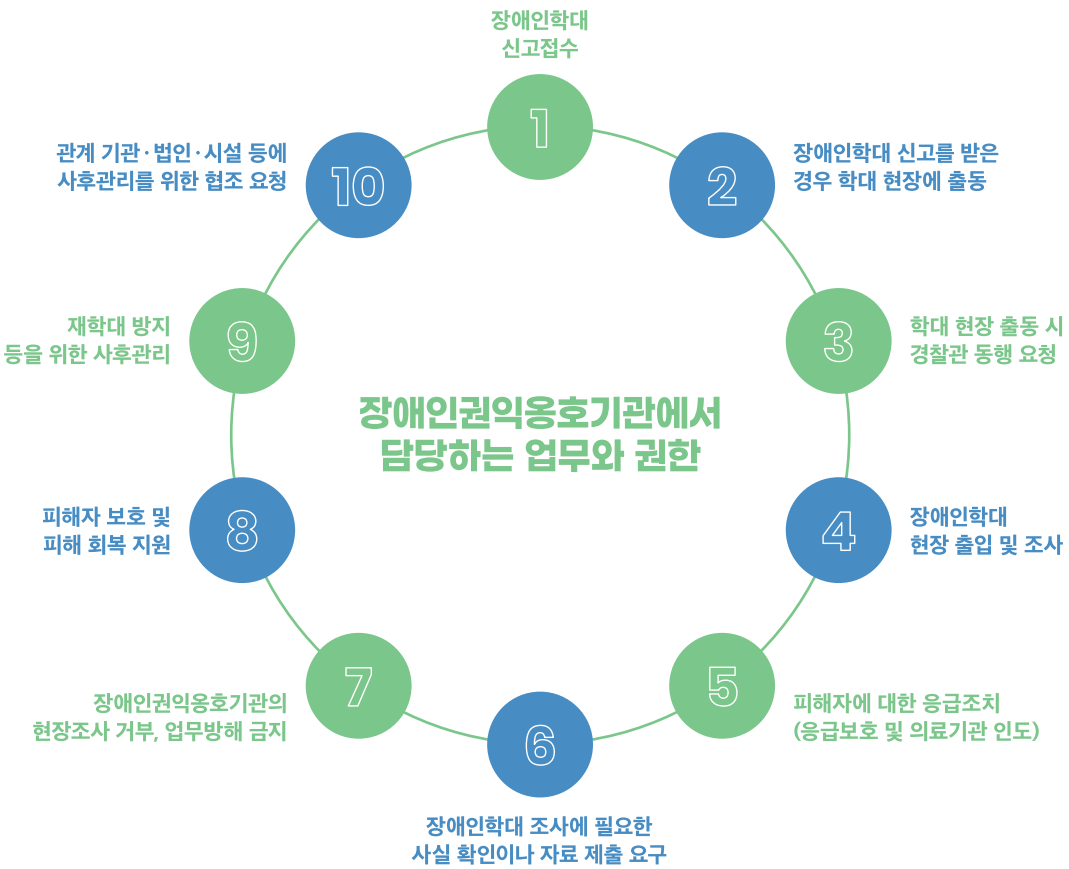
Q&A 18

0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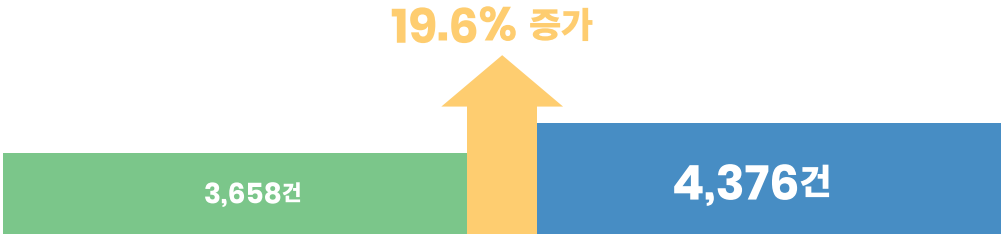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학대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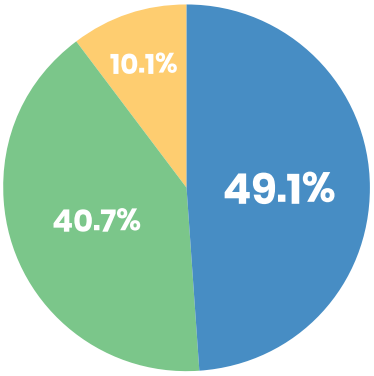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기관의 권한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02 장애인학대 현황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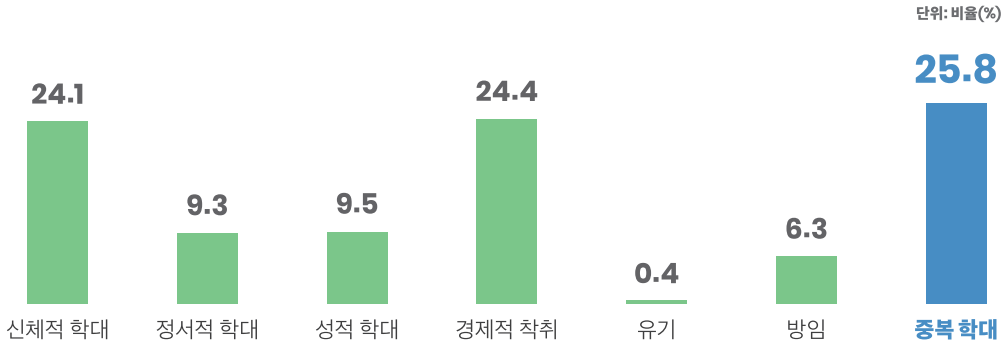


장애인 학대사례 **945건** 장애인학대가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 사례 **783건** 장애인학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잠재위험 사례 **195건** 장애인학대는 아니나, 학대 발생가능성이 있어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장애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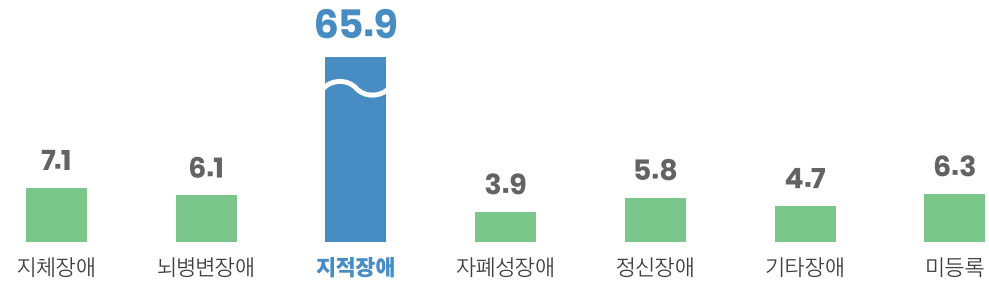


* **중복학대**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

피해자의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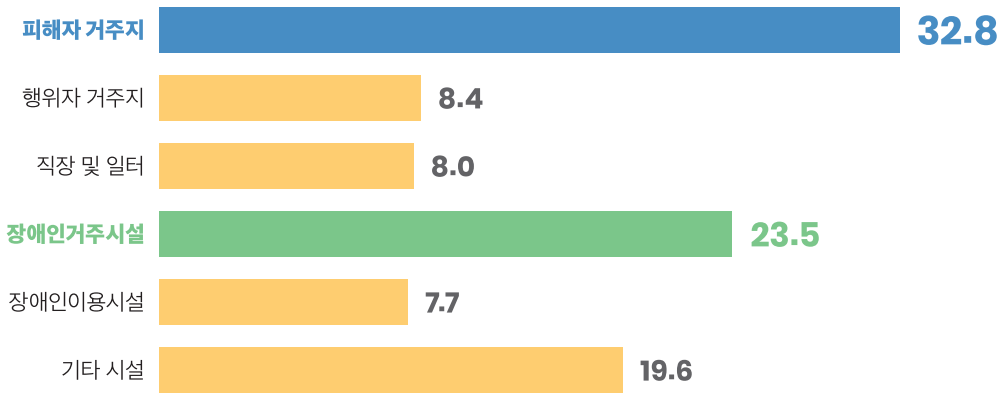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을 기초로 분석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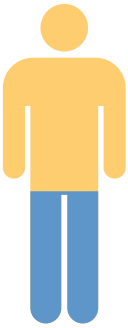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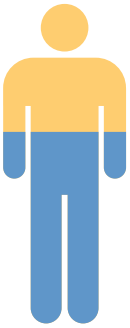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행위자 유형



가족 및 친인척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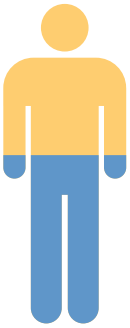
- **부모 12.0%**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4.4%
- 그 외 친척 4.3%
- 배우자 4.2%
- 자녀 1.4%
- 조부모 0.4%



타인

38.6%

- **지인 18.3%**
- 모르는 사람 6.8%
- 고용주 5.1%
- 동거인 4.7%
- 이웃 3.8%



기관종사자

34.0%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1.0%**
-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7.3%
- 교육기관 종사자 2.4%
- 그 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2%
- 의료기관 종사자 1.1%

신 고 안 내 서

03 장애인학대 알아가기

장애인학대 정의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장애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등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대표행위 **폭행·상해, 감금, 신체의 구속, 체벌·기합 등**



정서적 학대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대표행위 **폭언·협박, 모욕·무시·비하, 따돌림, 강요 등**



성적 학대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장애인에게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

대표행위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희롱, 신체 촬영, 성매매 강요 등**



경제적 착취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노동력, 재산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것

대표행위 **사기·준사기, 횡령, 배임·노동력 착취, 명의 도용 등**



유기·방임

유기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 방임이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것

***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후견인, 활동지원사, 복지시설 종사자,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됨

신고안내서

04 학대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징후

학대피해자에게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기에 학대 징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납득할 수 없는 **상처·부상**, 갑작스러운 **통증 호소, 체벌**이나 **구속·결박 흔적** 등

정서적 학대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 분노 표출 등 **평소와 다른 행동**

* 징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

성적 학대

성기나 가슴 등 **특정 부위의 통증 호소, 성적 표현의 증가, 불안·수면장애** 등

경제적 착취

개인물품의 **분실, 금전 지급 요청의 증가, 대출 관련 전화나 우편물 증가** 등

유기·방임

저체중, 위생상태의 불량, 건강상태의 급격한 악화, 방치된 상처 등

사 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A는 미성년자인 이용인 B가 밤마다 몰래 숨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에 집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B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사람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 B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신 고 안 내 서

05 장애인학대 행위자 처벌

금지행위와 벌칙

장애인학대는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도 일부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제59조의9)		**벌칙**(제86조)	
제1호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9조의9 제2호는 상해만 해당)
제2의 2호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9조의9 제2호의 폭행 포함)
제4호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5호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제6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호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8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시,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벌규정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경우, 그 종사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그 대표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신 고 안 내 서

06 장애인학대 사례

장애인학대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교육이나 행동 교정 등을 이유로 학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 례 ①

정신병원의 보호사 A 등은 소란을 피우거나 목욕을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입원환자인 B(지적장애)와 C(정신장애)를 때려 상처를 입혔고, D(지적장애)가 장난을 치며 업무를 방해한다고 이쑤시개나 클립을 편 것으로 D를 찔렀다. 재판과정에서 A는 환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A 등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의료법인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 례 ②

장애인복지시설장 A는 이용인 B(지적장애)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노래를 계속 틀어달라고 조르자 전기충격기로 스파크 소리를 내면서 겁을 주었다. 또한 다른 피해자 C(지적장애, 8세)가 일어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20~30분간 전기충격기로 스파크 소리를 내 겁을 주었다.
법원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였고 A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A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받게 되었다.

사 례 ③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교사 A는 B(지적장애, 4세)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문다는 이유로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B의 입술을 튕기고 엉덩이를 때렸다.
법원은 이를 장애인학대(폭행)로 판단하고 A에게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사 례 4

장애인복지시설장 A와 직원들은 이용인 15명의 장애인연금 등으로 장 운동기, 반신욕기, 러닝머신, 수치료기 등을 구입하였다. A는 이용인들에게 개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기를 구매하였고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용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물건을 개인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A와 직원들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 례 5

A는 복지관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지적장애)에게 다가가 말을 하다가 B의 팔뚝을 주무르고 발바닥을 간질이듯이 만졌다.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사 례 6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A는 근로장애인들(지적장애)이 싸움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서로 뺨을 때리고 싸우라고 강요하였다. 또한 유통기한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경과된 식품을 식사와 간식으로 제공하였다.
법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해 상한 식재료가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임에 해당하며,
서로 뺨을 때리게 한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A를 유죄로 판결하였다.

0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신 고 안 내 서

08 장애인학대 신고자 보호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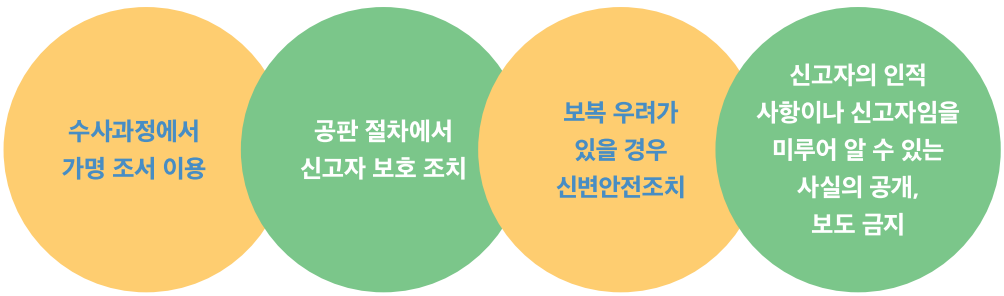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조건의 차별적 조치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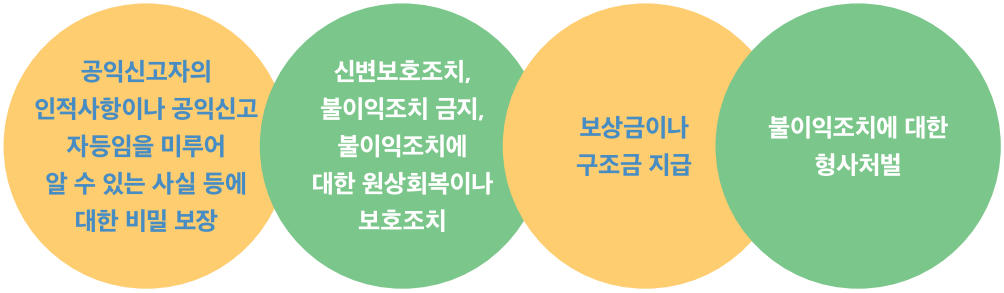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제30조)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사람, 조사에 협조한 사람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으로서 동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파면,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 감봉 등 부당한 인사조치나 근무조건 차별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를 당한 신고자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1398 / 044)200-7770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를 제보한 신고자 3명은 시설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였고, 보직이 변경된 후 해고되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장은 신고자들의 업무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등 정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이유로 시설장을 고발하였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설장은 시설을 퇴사하였고, 신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할 수 있었다.

신 고 안 내 서

09 장애인학대 신고 및 지원 절차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신고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가까운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우편 등도 가능합니다.)

학대 신고를 할 때에는 가급적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나 행위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신고접수나 학대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

이름, 연락처,
신고의무자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피해자 정보

이름,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소(사는 곳),
연락처, 동거인이나
가족 등 피해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



행위자 정보

이름,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대, 주소,
연락처 등 행위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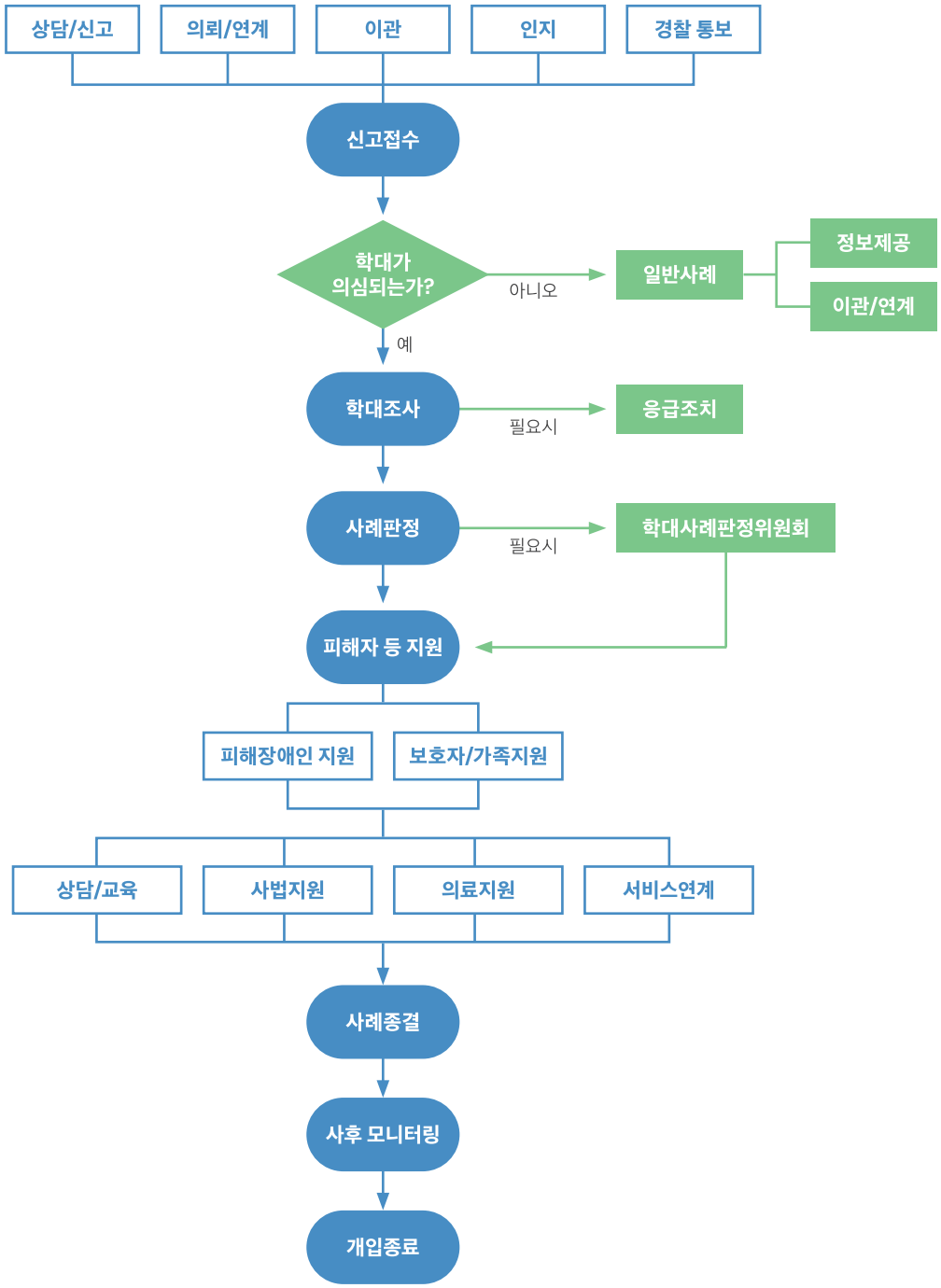


학대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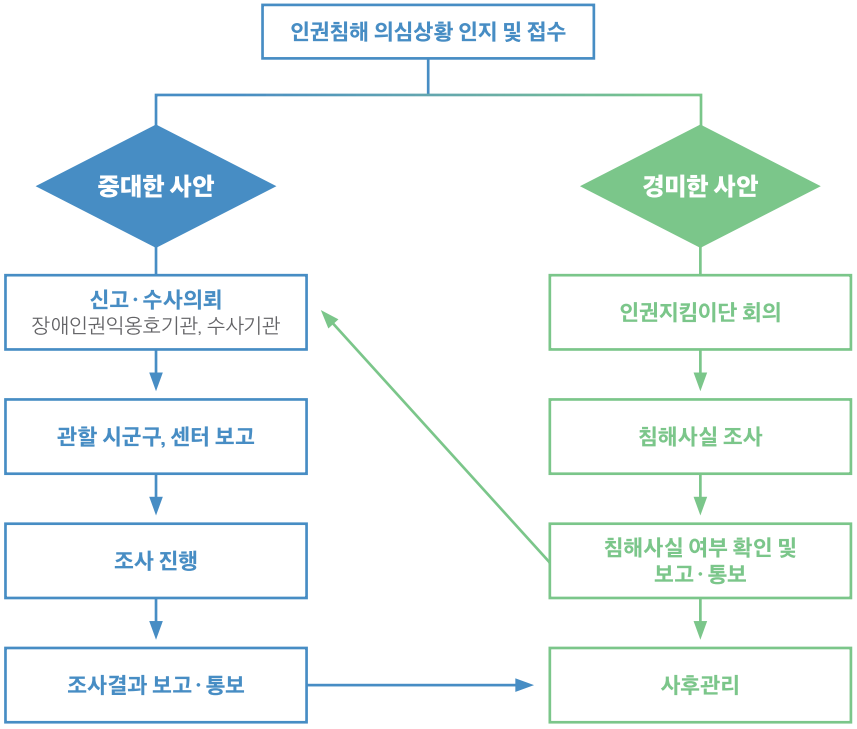
일시, 장소,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자료,
현재 학대의 지속여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나 신고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익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례지원 절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통한 신고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경중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참조

신 고 안 내 서

10 피해자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의료·심리·거주·사법 등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쉼터 등 안전한 장소 확인, 입소 지원
- 치료나 즉각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복지지원

- 미등록 장애인의 신속한 장애인 등록 절차 지원
- 지자체의 긴급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의료지원

-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상담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 연계
- 외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사법지원

- 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나 고발 절차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 등 다양한 법률지원



사후관리

-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 사후 모니터링은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방식과 기간 조율

Q&A

Q 시설 내 이용인 간에 학대가 벌어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이용인 간의 문제라도 장애인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학대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시설 내 학대조사가 끝난 이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학대조사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조사결과를 송부하며, 시설에 직접 학대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만일, 조사결과를 알고 싶거나 조사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응급조치는 어떤 때에 이루어지나요?

A 항상 응급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학대행위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매일 마주치게 되는 경우, 성적 학대가 벌어진 경우, 응급한 의료적 조치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요구되는 상황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응급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Q 시설 내부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보고를 한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인가요?

A 장애인학대를 인지하여 시설 내부절차에 따라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 측에서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시설에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종사자가 내부 보고 없이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장애인학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며, 경찰이나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전체 이용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립적 위치에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았거나 종사자 면담, 응급조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양평동)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3453-9527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부산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금복빌딩 6층(거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신천동)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 (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2-260-8295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4-905-8295	세종 한누리대로 2143, 금강시티타워 1동 604호(보람동)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누림 208호(오목천동)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민락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6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287-8295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분평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1-551-8295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37, 2층(모종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3-227-82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1-10, 경희궁빌딩 5층(효자동)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1-285-8298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4-282-8295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제주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이도이동)



장애인학대 신고

1644-8295

발행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행인** 은종군 **편집인** 김나영, 이정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전화 02-6951-1790 **팩스** 02-6951-1799 **누리집** www.naapd.or.kr **발행일** 2020년 10월

93330
ISBN 979-11-85498-83-6